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명박 인

2008년 6월 25일

국무총리 한승수

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

●대통령령 제20884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6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2조원”을 각각 “5조원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1천억원”을 “2천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제1호 나목 중 “제7항제1호 각목의 날”을 “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 중 “제8항제1호나목”을 “제9항제1호나목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7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1조4천억원”을 각각 “3조5천억원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4항 본문 중 “제2항 각 호”를 “제3항 각 호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으로서 제17조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)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집단은 이 영 시행일에 제21조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)제1항·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.

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

경제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2002년 및 1997년 이후 각각 변경되지 아니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과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기준의 상향 조정(영 제17조 및 제21조)

- (1) 2002년 이후 변경되지 아니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자산기준 등을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.
- (2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, 지정 이후 지정 제외 자산기준 등을 1조4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함.
- (3) 이에 따라 규율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수가 경제규모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정되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나. 기업결합 신고기준의 상향 조정(영 제18조)

- (1) 1997년 이후 변경되지 아니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.
- (2)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함.
- (3) 이와 같이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의 부담을 줄여 기업의 행정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 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명박 인

2008년 6월 25일

국무총리 한승수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

●대통령령 제20885호
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”이라 함은”을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도예금

제19조의8제2항 중 “법 제8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”를 “법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 타 회계에”로 한다.

제19조의11제1항 중 “법 제8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”을 “법 제8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앙회 타 회계로부터의 출연금”으로, “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80조의2제1항에